

“주거복지 실현전략”

#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곽 인 숙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 1.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택공급 측면보다는 질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최저주거수준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주거복지과가 신설되어 주택이라는 하드웨어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주택(하드웨어)과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소프트웨어)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내용과 업무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있지만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주거복지에 대한 정의와 대상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주거복지라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여전히 생소한 주제이자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부문에서도 주거복지라는 기준의 주택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주택문제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정도였으나 다행히 최근 들어 복지 분야에서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주거복지가 복지부문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학회의 ‘주거복지분과’에서는 주거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주거복지’는 수혜자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인프라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조직과 그 서비스 활동의 총체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는 ‘주거권’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나, 주택법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한다면, 주거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실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차원에서의 주거욕구의 충족으로서 수요자 입장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 “주거복지 실현전략”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를 위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거복지의 적용 범위는 1차적으로 주택이라는 물리적 건물이 제공하는 서비스, 2차적으로 주택의 집합성에 의한 주거단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3차적으로 주택의 위치 고정성에 의한 균린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겠다. 주거복지의 적용 범위를 보면 작게는 주택단위에서 크게는 주거동/단지/동네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 이는 주택이 사회재 및 공공재인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주택 자체와 주택이 속한 지역사회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포함해야 할 뜻하고, 한편으로는 주거복지가 주택이라는 하드웨어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인 소프트웨어도 함께 주거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물리적 측면의 주거복지의 범위는 개별주택(내부 환경)의 최저주거기준의 달성,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제공, 기존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지원, 유니버설(universal) 주택 공급 및 개보수 지원 등을 포함한다. 주거단지/동네 및 커뮤니티의 측면에서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단지 및 커뮤니티설계, 계층 간 혼합(social mix)을 촉진하는 단지 및 커뮤니티설계, 기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거복지의 범위는 자활(regeneration) 촉진 프로그램,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촉진, 임차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한 임대주택단지 생활개선, 참여확대 등이 포함된다.

주거복지의 기본적인 수혜 대상은 전 국민이며,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의 주거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주거수준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계층이나 경제적 약자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물리적 수준이 주거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소유자

가구, 주거비 지불능력이 없는 가구,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대단위 주택단지 공급,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융자 등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고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서민주거복지가 강화되어 저소득층 직주근접형 주택공급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주택매입·전세 지원, 영세민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지원, 노인주거시설의 장애제거 및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 2.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선진국의 주거복지의 관심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주택을 인권의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폐쇄한 주거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안녕 및 자기 의존감을 제고한다는 정책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오래 전부터 주거기준을 설정해왔으며, 주택법(The Housing Act 1985)을 통하여 주거기준, 도시빈곤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정책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내에서 지불가능하며 폐쇄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대응하는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주택정책의 기조를 “양적 공급”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였고, 최저주거기준, 평균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가구원수별 실구성별 실면적, 주호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주거기준은 실제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01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주거복지정책의 주요한 부분이 고령자주거와 관련된 정책이다. 고령

## “주거복지 실현전략”

차관련 주거복지 정책은 크게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와 신축·기존주택의 무장애화(배리어프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택 성능표시 제도’의 시행이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과 달리 공영주택보다는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축규제, 금융지원 등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특히 주택의 물리적 수준에 따라 용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주택규정(Housing Codes)으로 주마다 차이가 있어 표준 주택규정을 제시하기 어렵다. 부시 행정부는 1970년대 아래 미국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을 이룬 임차인의 지불능력(affordability)에 기초하여 폐적인 지불 가능한 주거의 확대, 취약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커뮤니티 강화 등에 주거복지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보건,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거는 현대국가의 주요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거에 대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서의 인식은 일정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에 대한 양적·질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거 복지적 발상을 내포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생산자보조방식과 주거급여(임대료 보조)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 중심의 소비자보조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사회복지의 역할 중 주거를 매체로 한 복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기구에 주거복지의 업무를 담당시키거나 별도의 주거복지전담기구가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복지’와 ‘주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두 분야의 담당부서 간에 교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사회보호로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수요자 개인별 요구에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수요자를 민간서비스와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담공무원의 역할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 3. 주거복지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호’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일본에서는 ‘재택복지’ 혹은 ‘지역사회보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복지’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복지정책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로 전환되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요보호대상의 개별적인 욕구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재가복지서비스<sup>1)</sup>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부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가정에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정에 계속 머무는 동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내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간적 의미는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파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사회내 이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문서비스(in-home service)를 말한다.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3대 핵심 사업은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이다. 주간보호사업은 자기 가정에서 통원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유아원(어린이집), 탁노소(주간보호센터) 등이 이에 속한다. 주간보호사업의 역할은 요보호 대상자의 수용시설 입소시기를 늦추든가 입소를 하지 않고

1) 1992년 보건사회부의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 ‘재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재가복지의 개념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주거복지 실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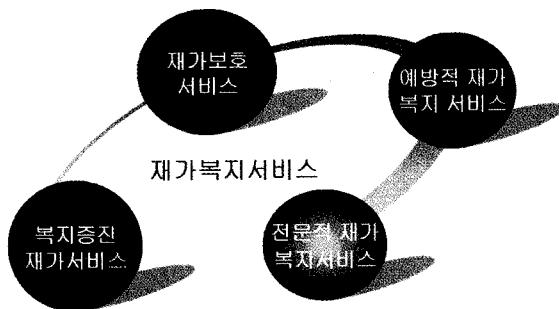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주간보호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요보호 대상자의 교통서비스,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능력 훈련,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목욕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대상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단기보호사업은 요보호 대상자들을 단기간 수용·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질병이나 여행 또는 개인적 일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안정과 휴양의 장소 제공, 보호·감독, 사회적 고립 예방, 상담, 의료재활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요보호 대상자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사지원서비스, 대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보호는 매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로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을 내용별로 보면 전문적 재가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 예방적 재가서비스, 복지증진 재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적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족이 대처할 수 없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전문적 방문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재가보호서비스는 가족의 힘만으로 부양을 충족하지 못 할 때, 가족 대신에 사회적 원조에 의해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가사서비스, 신변의 원조, 정신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예방적 재가서비스는 요보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 식생활·주생활의 개선, 장애인의 발생 예방, 주민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복지증진 재가서비스는 일반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사회참가활동을 촉진시키거나

###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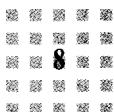
▲ [그림 1]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교양수준을 높이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보호차원에서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재가복지 서비스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집수리사업이나 주거급여서비스, 주택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지역경보장치서비스 그리고 몇몇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노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대규모 단지 위주로 공급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수요자의 주거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형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직주근접이라는 개념이 중시되면서 주로 도시 내에서 공급된다. 특히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최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등 특수취약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삼으며, 주거와 복지의 연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급방식은 최근 등장한 세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입주자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시스템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보호의 대상은 저소득층, 극빈층



## “주거복지 실현전략”

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일반인에게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다수를 위한 서비스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funding) 체계의 유연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 4. 바람직한 주거복지의 방향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생산자보조방식과 주거급여(임대료 보조) 및 주택 구입 자금대출 중심의 소비자보조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그러나 향후 주거복지정책 방향은 기존의 물리적 주택공급에서 탈피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저주거수준의 설정에서도 물리적 지표이외에 주택 내외부의 환경적 측면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돋는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총체적인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과정에서 고령화의 진전, 사회의 양극화 현상,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고립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신중하게 관련 제도의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양적 중심의 정책에서 질적 중심의 정책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전체로 넓혀 우리 국민 모두의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바꿔야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는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정립, 주거복지 실태파악 및 평가체계 개선, 주거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보완, 주거복지 기반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의 마련 등이다.

첫째,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관련정

책들을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주거복지 정책은 다른 분야의 사회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현재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구는 건설교통부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 중앙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부처간의 연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과거의 수직적인 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보호로서의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전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보호차원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재가복지 서비스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주거급여서비스, 주택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지역경보장치서비스 그리고 몇몇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노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거주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에 입각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의 범주를 넓혀 보편적인 다수를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점차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주거복지 실태파악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의 평가에서는 주거공간의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거주자의 복지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주거서비스를 복지적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양적·질적 지표와 함께 거주자의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 보완을 통해 쾌적성, 편리성, 보건성, 건강



## “주거복지 실현전략”

성,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평가요소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선진국의 임대료보조 제도를 도입·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주택의 질적 유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단지에서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주거복지 수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주거복지 수혜자로서의 준수 사항과 의무 규정에 대한 정비와 이와 관련된 의식고취를 위한 주거복지 수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생활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주택관리가 단순한 주택의 수명연장 차원을 넘어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연계된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법령 정비를 통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모색과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국가 정책은 법령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보편적 원칙인 만큼, 시대 요구에 부응하면서 주거복지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각종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주거복지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의 한계사항은 주거권(Right to housing)과 같은 주거복지 측면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과 최저주거수준 등이 물리적 정비에만 집중하여 거주자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소프트웨어로서의 거주자 요구나 생활패턴 등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가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주

거복지의 핵심인 ‘주거학’ 분야에서 주거복지 관련 교과과정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회복지, 도시개발, 도시공학, 부동산학, 지역개발 등 유사 관련학과나 전공에서 주거복지관련 교과과정 개설도 필요하다.

주거복지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배출은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주거복지관련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칭)주거복지사를 양성하거나 혹은 기존 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한다면, 향후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해 주거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이 그 지역사회내에서 보호받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히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임대아파트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 분리를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만의 개선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사회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복지사회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설명 : 요보호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건강유지를 도모하게 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그림 2] 설명 :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따뜻하게 조

### “주거복지 실현전략”



▲ [그림 1] 무료경로식당 운영



▲ [그림 2] 무료도시락 배달 및 밑반찬 지원



▲ [그림 3] 가사간병도우미활동



▲ [그림 4] 무료빨래방 사업



▲ [그림 5] 재가 장애인 심부름센터



▲ [그림 6] 재가대상자나들이



▲ [그림 7] 재가어르신 생선상 차려드리기



▲ [그림 8] 저소득가정 사랑의 김치나누기

리된 반찬과 도시락을 각 가정으로 배달

[그림 3] 설명 :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및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환경을 개선

[그림 4] 설명 : 세탁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세탁물 수거, 세탁, 배달을 통한 집안 환경개선 및 보건위생을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

- 일정 : 연중, 매주 월, 수, 금요일

- 대상 : 단지내 세탁사업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및 어르신 세대

- 이용 : 전화, 내방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그림 5] 설명 : 장애인 심부름 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일상 생활유지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거복지 실현전략”

- 대상 : 주공 1단지내 심부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가장애인 세대
- 이용 : 전화, 내방 상담 후 이용

[그림 6] 설명 : 문화적 활동 참여에 한계가 있는 재가 대상자에게 아외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함

-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그림 8] 설명 : 충분한 먹거리의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저소득 대상자들을 위해 동절기 김장김치를 지원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웃사랑실천에 앞장선다.

- 대상 :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세대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 350가구

[그림 7] 설명 : 가족의 관심이나 보살핌에서 소외되어 생신상을 차리지 못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 드림

- 대상 : 사례관리대상자 어르신